미국형법에 규제된 정당방위제도의 반동성

김 철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식생활양식의 본질적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사기와 협잡, 패륜과 패덕, 인간증오와 야수성, 야만성입니다.》

미국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생활양식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정당방위제도와 같은 반동적인 법률적제도들을 통하여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미국사회를 가리우고있다.

정당방위는 비법적으로 침해하는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법적인 리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적법적리익을 범죄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 유익한 행위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 형법들에서 중요한 형법상제도로 규제되고있다.

미국형법에서는 정당방위제도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인 변호사유의 하나로 되여있다.

미국은 온갖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는 저들의 정당방위제도를 놓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구현된 법률제도인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의 정당방위제도는 그자체가 철저히 미국사회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반인민적인 미국사회를 미화분식하는데 적극 복무하는 반동적인 법률적제도이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정당방위제도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사회의 반동적성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법률적제도라는데 있다.

미국은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이며 그것이 극도에 달한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황 금만능과 약육강식, 온갖 패륜패덕은 바로 미국의 진면모이며 이로 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꺼리낌없이 감행되는것은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 미국이 범죄의 왕국, 범죄의 서식지로 세상에 인정되고있는것은 중요하게 미국의 법률제도 특히 정당방위제도와 같은 형사법상의 제도들이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개인주의를 반영하여 규제되고 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미국형법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대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개인의 리익에 대한 정당방위만을 인정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가 및 공공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를 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오히려 질서를 혼란시킬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에 허용할수 없다는데로부터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대한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있다.

미국의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자기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그 범위를 개인에게 한정시키고있을뿐아니라 정당방위를 자기방어와 다른 사람방위, 자기 집과 재산방위로 세분하여 규제하고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정당방위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위한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있는것은 정당방위제도를 통치배들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더욱더 반 동화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과 같은 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적리익을 위한 정당방위라는것이 결코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정당방위제도가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온갖 패륜패덕과 약 육강식을 더욱 조장시키는 법률적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모든 법률적제도에는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 반영되게 된다. 미국에서는 모든 법률적제도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의 미명아래 규제되고있으며 정당방위와 같은 형법상제도역시 미국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철저히 보 장해주는 《법률적수단》으로서 위장되여 미국에서 온갖 패륜패덕과 사회악을 조장시키는 법률적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이 부모를 총으로 쏘아죽이고 안해가 남편을 살해하며 가까운 친구들사이에 총으로 쏘아죽이는 등 비도덕적인 현상들이 정당한 방위행위로서 합법화되고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어지럽히는 살인과 폭력행위와 같은 강력범죄들이 정당화되고있다. 실례로 1917년 미주리주재판소는 권총으로 아버지를 위협하는 아들을 설복하려는 아버지를 쏘아죽인 사건에서 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심리재판소의 판결을 취소하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자체방위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1997년 오하이오주에서는 남편이 때린다고 하여 안해가 권총으로 남편을 쏘아죽이고 재판소에 정당방위로 상소하였다.

미국의 정당방위제도가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미국사회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한 그것이 미국을 더욱더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정당방위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범죄자들의 온갖 범죄 적행위를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공간을 마련해주고있다는데 있다.

소송위주의 미국형사관계에서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자면 세가지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범죄자에게 범죄적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정당화된 범죄적행 위로 되지 말아야 하며 타당한 리유를 가지고있는 범죄적행위가 아니여야 한다. 여기서 범죄적행위의 《정당화사유》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피해자의 동의 등이 포함되며 《타 당한 리유》에는 정신병이나 책임나이와 같은 사유들이 포함되고있다. 이러한 《정당화사 유》와 《타당한 리유》들은 미국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의 형사적책임을 변호할수 있는 합 법적인 사유들로 되여있다.

《정당화사유》와 《타당한 리유》의 매 사유들은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형사적책임을 회 피하고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공간으로 되고있지만 여기서 특히 정당방위제도는 범죄자 들의 온갖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어떤 형사적책임도 모면할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 인 범죄수단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미국의 정당방위제도가 방위에 리용되는 수단이나 세기, 장소 등에서 제 한을 주지 않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방위자의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회에 유익한 행위이지만 외형상으로는 범죄로 나타나기때문에 국가는 정당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그 수단이나 세기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주고있다. 만일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 그것을 초과방위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폭력수단인 총기류에 대한 소유가 헌법적으로 합법화되여있으며 정당방위제도는 이러한 총기류들을 정당방위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실례로 정당방위의 하나인 자기방어에서 방위자는 세가지 환경 즉《필요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믿을수 있으며 오직 방위를 위해서》라는 조건만 있으면 치명적폭력수단을 사용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당장 일어나려고 하는 위급한 공격을 물리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현재 죽이거나죽어야 할》선택앞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믿을 때 방위를 위해 치명적폭력으로 물리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규제로 하여 오늘 미국에서는 자그마한 분쟁도 총기류에 의거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당방위로 합리화되고있다. 더우기 총구앞에서 자기방어의 필요성과 합리 성은 자연스러운것으로 정당화되고있다.

미국의 형법은 지난 시기에 치명적폭력수단의 사용을 주택방위에 한정시켰으나 오늘에 와서는 공공장소에까지 확장시켰을뿐아니라 재산방위와 관련하여서는 즉시적인것이아닌 위협인 경우에도 치명적폭력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하였다. 더우기 합법적인 정당방위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자들에게 포괄적인 형사적 및 민사적면제까지도 규제함으로써 미국의 형법은 사회에 정당방위의 미명아래 총기류범죄가 범람할수 있는 법률적조건을 마련하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지우고있는데서 나 타나고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의 합법성을 변호하는 과정은 증거를 제시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증거의 우세로서 그 정당성이 증명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의 변호에 증거를 제시하는것을 《제출의 부담》이라고 하며 증거로서 정당방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것을 《설복의 부담》이라고 부르고있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제출의 부담》과 《설복의 부담》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키고있다.

미국은 정당방위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는 리유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피고가 정상인이며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라고 주장 하고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피고에게만 지우는 《개인주의원 칙》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정당방위로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공간을 지어주고있다.

돈과 권력에 의해 모든것이 지배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합법적 공간들은 범죄자들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저들의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도록 적극 부추기는 작용을 하게 된다. 실례로 미국에서 정당방위제도의 《표준》으로 되고있다 고 하는 플로리다주의 《개인보호법》(2005년 제정)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당하는 위협에 대하여 론리적추정만 하게 되면 피고의 정당방위행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제는 형사실천에서 검사들로 하여금 위협에 대한 피고의 추정을 거의 반박할수 없게 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와 같은 형법상제도들에 대한 반동적인 규제로 하여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공공연히 정당화되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각종 범죄발생의 법률적근원으로 되고있다.

현시기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살인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들사이에서 일어나고있으며 이러한 살인범죄들은 모두 정당방위의 미명아래 저질러지고 그에 의해 합리화되고있다.

미국형법에 규제된 정당방위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미국을 《자유》와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미화분식하는 법률적수단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은 형법상의 정당방위제도를 놓고 마치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있는 법률제도라도 되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미국사회의 기 초인 극단한 개인주의를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는 법률제도이며 미국에서 온갖 범죄와 패 륜패덕을 조장시키는 반동적인 형법상제도이다.

오늘 미국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정당방위법을 가리켜 《자기의 집과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성문화한것으로서 《정당방위권》이 《준법시민》의 기본 권리로 된다고 줴쳐대고있다. 그들은 미국의 정당방위제도가 정당방위에 대한 증명에서 《당사자원칙》을 《구현》하고있기때문에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권이 철저히 보장》된 법률적제도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저들의 정당방위제도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합리화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미국을 범죄의 소굴로 더욱 몰아가는 법률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미국의 정당방위제도는 통치배들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더욱더 반동화되고있다. 실례로 미국형법에서는 비치명적폭력수단을 사용하면서 공격하는자에 대한 자신을 방위할 때 방위자가 치명적폭력수단을 사용하는데서 두가지 원칙 즉 비치명적폭력수단을 사용하면서 공격하는자에 대해 방위자가 치명적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물러설것을 요구하는 《철퇴원칙》과 치명적폭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불철퇴원칙》을 인정하고있다. 여기서 《철퇴원칙》은 지난 20세기말까지 련방을 비롯한 대다수 주들에서 적용되여왔으며 《불철퇴원칙》은 서부의 몇개 주들에서만 인정되고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어난 2001년 9월 11일 사건이후 테로의 공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점차 여러 주들이 《불철퇴원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까지 미국의 40개주이상이 자기방어에서 치명적폭력사용을 확대한 새로운 립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대다수 주들이 자기방어에서 치명적폭력수단의 사용을 합법화한 《불철퇴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제도와 같은 반인민적인 형사법적제도에 의하여 범죄가 줄 어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되고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0년에 련방 및 주 감옥들과 형무소들에 수감된 범죄자수가 약 33만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 한해동안에만도 폭력범죄와 재산 범죄로 체포된자들의 수는 300여만명에 달하고 여기에 경범죄로 체포된자 1 770여만명 까지 합하면 그 수는 2 000만명을 훨씬 넘고있다.

하기에 미국사람들자체도 미국법이 규제한 정당방위권을 놓고《방위권》이 아니라 범죄로 항상 불안속에 살고있는 미국사람들을 살인에로 떠미는 《살인허가증》이라고 개란하고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는 미국의 정당방위제도와 같은 법률제도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폭로비판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법률적으로 옹호고수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